

<2022년 제2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참여 안내문>

▣ 참가자격(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
-공공구매 제도에 의한 신청품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확인 인증 기업

2. 신청품목과 관련된 기술 및 품질 인증 각각 1개 이상 보유

기술인증	NEP, NET, 전력신기술, 녹색기술, 신기술농업기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가구제품에 한함)
품질인증	성능인증, GS, GD, K마크,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에너지절약마크,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 GR, 환경표지, KS, 단체표준,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Q마크, KAS인증

*품질인증 미보유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접수마감일 기준 2년이내)

3.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대표법인의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
- 기업신용평가 CCC+ 이하 부적합 처리

▣ 참가요건

1. 대표법인(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에 운영 중인 공동브랜드 ‘펌프로’ 참여조합원사로 등록된 기업

-비참여조합원사 참가 방법

1) 제출서류 : 가. 공동브랜드 펌프로 참가 신청서

2) 참여조합원 분담금 : 분담금 3,000,000원

(분담금은 품목수와 상관없이 동일하며 기업 출자금이 아닌 사업을 위한 분담비용임)

3) 입금 계좌 번호 : 우리은행 1005-001-417904, 예금주: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공동브랜드 펌프로 참여 신청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받아 조합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 ‘펌프로’ 아래와 같이 참여코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업 체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FAX	
세 부 현 황	※ 품질, 기술 인증, 기업 신용평가 증빙 자료(사본) 첨부 요망,					
	기업신용등급		참여 분담 비용 금액	3,000,000원(입금예정일: 월 일)		
	주요 생산 품목	원심펌프				
	기술인증현황	1. 2. 3.				
	품질인증현황	1. 2. 3.				
2022년 04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 물품 지정 신청 안내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직접생산확인 인증을 획득한) 품목 중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2. 신청품목 및 지정내용

1) **수중펌프 신규 최초 지정**

2) 원심펌프 신규업체추가 및 원심·수중펌프 신규규격(인증)추가

3) 수중펌프 및 원심펌프 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8자리) : 신규품목지정

3. 신청요건

- 동일 품목을 지정받고자 하는 5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청
- 5개 이상의 중소기업 중 40%는 소기업이어야 함
-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과 관련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 비율이 40% 이상

<인정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가중치 배점>

기술인증	NEP, NET, 전력신기술, 녹색기술, 신기술농업기계지정	1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	0.5점
품질인증	성능인증	1점
	GS, GD, K마크,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에너지절약마크,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 GR, 환경표지, KS, 단체표준,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Q마크, KAS인증	0.5점
	*품질인증 미보유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2년이내)	

※기술인증 중 특허의 경우 통상실시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통상실시권은 배점이 '0'점임

※보유비율 산출방법 : 참여기업 기술(품질)점수 합계 ÷ 참여기업수 × 100 = % (1개 기업 최대 획득 점수 1점)

4. 지정절차

- ①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물품식별번호 등록(상품정보시스템)
- ② 물품평가심사자료 접수(조달청) - 접수기간
- ③ 참여기업별 현장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조달품질원)

- ④ 물품평가심사(참여기업별 기술평가심사) -발표심사
- ⑤ 제품규격서 검토(조달품질원) - 심사기간과 관계없이 진행
- ⑥ 법인평가심사자료 접수(조달청)
- ⑦ 법인평가심사(대표법인 PT발표) - 원심펌프 지정 신청시는 생략
- ⑧ 최종심사(계약심사협의회 상정)
- ⑨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5. 지정기간(최대 6년 = 최초지정 3년 + 연장심사 3년 이내)

- 최초 3년으로 하되 최초지정 1년 6개월 후 지정관리심사에 따라 잔여 지정기간(1년 6개월) 지정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
- 최초 지정 3년 후 연장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수중펌프 및 원심펌프의 지정기간은 최초지정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됨
 - ▷수중펌프 : 지정일로부터 3년
 - ▷원심펌프 : 2017.08.31.~2023.08.30.까지 (연장심사 완료)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3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신청서

신청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참 가 품 목	품 목-1 (G2B번호)	ex)원심펌프				
	기술현황	ex) 실용(전용)1건,특허(전용)1건....				
	품질현황	ex) KS 1EA, 성능인증1건.....				
	품 목-2 (G2B번호)					
	기술현황					
	품질현황					
담당자	성명/ 직책		이메일		핸드폰	
참고 사항	1. 특허인 경우 등록일로 부터 7년이 경과되면 제외됨. 2. 실용신안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면 제외됨. 3. 통상실시권은 참여기업에 부과되는 점수 없음. 4. 품목은 G2B 분류번호로 기재함.					
귀 조합에서 진행하는 2022년 제3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22년 06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